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

발의연월일: 2020. 6. 8.

발 의 자:홍문표·엄태영·정진석

조경태 · 박영순 · 문진석

윤주경 • 이명수 • 정운천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수도권 제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2020.7.8. 시행)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혁신도 시로 지정될 수 있는 충남 등의 경우 그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경기침체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로 지정되는 혁신도시에서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 인재 채용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가로 지정되는 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2020년 24% → 2022년 이후 30%)보다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사람"을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	역인재 채용 등) ①
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	
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	
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	
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	
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u>사람</u> 을 이전공공기	사람(이하 "이전지역인
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u> 재"라 한다)</u>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	

학교	를 졸	업 한	후 1	다른	지역	에
서	「고등	교육	법」	제	2조	각
호에	따른	학	교를	졸약	설하 였	[거
나 졸	즐업예?	정인	사림	은	해당	0]
전지	역의	채용	-의무	- t	개상어	l서
제외	한다.					

<신 설>

<u>②</u> ~ <u>④</u> (생 략)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1항</u>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1항</u>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 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
라 지정된 혁신도시의 이전공
공기관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
향 조정할 수 있다.
$\underline{3} \sim \underline{5}$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u>⑥</u> <u>제1항 및</u>
제2항
<u>⑦</u> <u>제1항 및</u>
제2항